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(2022.12.31.)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
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(2022.9.8. ~ 9.28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의 본문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내용 일부 개정으로, 추계 작성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.

4. 작성자

- 도로관리과 주무관 박운학(02-2133-8145)